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심기보 의원 등 7인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9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9년 6월 04일

## 3. 제안사유

- 법제처의 법령 입안·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어표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제1조(목적)에 사용된 약어 표기를 삭제하고 제2조로 이동 (안 제1, 2조)
- 나. 도지사 및 충청북도에 대한 약어 표기 사용 (안 제2, 3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### 가. 제출배경

- 법제처의 법령 입안·심사기준에 따라 제1조(목적)에 사용된 약어표기를 제2조로 옮기고, 필요한 약어표기를 추가하였으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 및 검토 의견

- 안 제1조에서는 법령 입안·심사 기준에 따라 약어표기를 제2조로 옮기고,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“충청북도고문변호사”를 “충청북도∨고문변호사”로 개정함.
- 안 제2조에서는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약어표기를 추가하고,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“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”를 “개업∨중인 변호사∨중에서”로 개정함.
- 안 제3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 일상적 변호 활동 수행에 있어 기피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, 조 제목을 “(업무)”에서 “(업무 등)”으로 개정하였고, 충청북도에 대한 약어표기를 추가함.
-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·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 등 일부를 정비한 것으로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 법적 문제가 없으며 내용 및 절차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<참고자료>

#### □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위촉 및 실적 현황

- 위촉 근거: 「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조례」 제2조(위촉)
  - 도지사는 ~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고,
- 위촉 인원수: 5명 (‘19. 5. 기준)
- 자문 실적: 법령해석, 행정심판, 소송사건, 법률 등 자문 (‘16. 1.~‘19. 5.)

구분	총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건수	64	9	9	16	30